의 안 번 호	제 호
의 결 연 월 일	2019. . . (제 회)

의결사항

건 강 검 진 기 본 법 시 행 령 일 부 개 정 령 안

제 출 자	국무위원 박능후 (보건복지부장관)
제출 연월일	2019. . .

법제처 심사를 마침

1. 의결주문

건강검진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건강검진기관에 대한 평가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하여 건강검진기관에 대한 평가에서 가장 낮은 등급을 두 번 연속하여 받은 경우 업무정지 3개월, 세 번 연속하여 받은 경우 지정취소를 명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건강검진기관이 정당한 사유 없이 건강검진기관의 평가를 거부한 경우 1차 위반 시 업무정지 3개월, 2차 위반 시 지정취소를 명할 수 있도록 행정처분의 기준을 강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3. 주요토의과제

없　　음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기관 없음

라.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2018. 9. 5. ~ 10. 15.)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대통령령 제 호

건강검진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건강검진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항 중 “통보하여야”를 “통보해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를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로, “통보하여야”를 “통보해야”로 한다.

제10조제1항제5호를 제6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법 제15조에 따른 검진기관의 평가에서 가장 낮은 등급을 연속하여 받은 경우

별표 Ⅰ 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행정처분의 가중된 처분기준은 최근 1년간(법 제15조에 따른 검진기관의 평가에서 가장 낮은 등급을 연속하여 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같은 위반행위로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행정처분을 받은 날과 그 처분 후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하여 적발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

별표 Ⅰ 제2호부터 제4호까지를 각각 제3호부터 제5호까지로 하고, 같은

Ⅰ에 제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 제1호에 따라 가중된 부과처분을 하는 경우 가중처분의 적용 차수는 그 위반행위 전 부과처분 차수(제1호에 따른 기간 내에 행정처분이 둘 이상 있었던 경우에는 높은 차수를 말한다)의 다음 차수로 한다.

별표 Ⅱ 제10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0. 정당한 사유 없이 법 제15조에 따른 검진기관의 평가를 거부한 경우	법 제16조 제1항제5호	업무정지 3개월	지정취소	

별표 Ⅱ 제11호를 제12호로 하고, 같은 Ⅱ에 제11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1. 법 제15조에 따른 검진기관의 평가에서 가장 낮은 등급을 연속하여 받은 경우	법 제16조 제1항제5호			
가. 법 제15조에 따른 검진기관의 평가에서 가장 낮은 등급을 두 번 연속하여 받은 경우		업무정지 3개월		
나. 법 제15조에 따른 검진기관의 평가에서 가장 낮은 등급을 세 번 연속하여 받은 경우		지정취소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검진기관의 지정취소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의 위

반행위로 받은 행정처분은 별표 Ⅱ 제10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위반 행위의 횟수 산정에 포함하지 않는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8조(건강검진종합계획의 수립 등)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11조에 따른 건강검진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의 효율적인 수립을 위하여 위원회의 검토를 거쳐 종합계획안 작성 기준을 정하여 종합계획이 수립될 해의 전년도 4월 30일까지 국가건강검진을 담당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이하 "관계 중앙행정기관"이라 한다)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생 략)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확정된 종합계획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 및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생 략)	제8조(건강검진종합계획의 수립 등) ① ---------- 통보해야 ----. ② (현행과 같음) ③ ----------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 ---------- 통보해야 ----. ④ (현행과 같음)
제10조(검진기관의 지정취소 등) ① 법 제16조제1항제5호에서	제10조(검진기관의 지정취소 등) ①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 4. (생 략) <신 설> 5. (생 략) ②·③ (생 략)	----------. 1. ~ 4. (현행과 같음) 5. 법 제15조에 따른 검진기관의 평가에서 가장 낮은 등급을 연속하여 받은 경우 6. (현행 제5호와 같음) ②·③ (현행과 같음)

〈 의안 소관 부서명 〉

보건복지부 건강증진과	
연 락 처	(044) 202 - 2828